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15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이원택・이병진・임호선

윤준병 • 서삼석 • 주철현

문대림 • 위성곤 • 임미애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 금"이라 함)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불금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12월 그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증가, 소비자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증가 등으로 직불금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4년 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증가(약 11.6배)하는 등 지원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한편, 직불금은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고, 총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 기준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임. 또한, 피해보전직불급의 지급단가가 차액의 95%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농어업 피해보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해당 연도 직 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 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 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였을 때,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 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하거나 협정상 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20년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을 "평균가격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초과하고"를 "초과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를 각각 "차액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 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 른 피해보전) ① -----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 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 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 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 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 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 ------20년간-간 시행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 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급기준) ①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 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 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

선식섭시불금을 매년 시급한다.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
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
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
를 제외한 3년간의 <u>평</u> 균가격
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
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
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
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
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
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 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 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 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 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u>초과하고</u> 협정상대국 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

				•
1.	 			
	 		평균기	<u> </u>
2.	 			
	 초과	하거니	}	
	 		 	

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학교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 함과기준수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의일수를 1년으로 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 ③ (생 략)

-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 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 균가격의 <u>차액에 100분의 95를</u>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u>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u>.
 - ③ ~ ⑤ (생 략)

_			
	•		
_			
_			
_			
_			
_			
_			
_			
_			
_			
_		·	
		•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	:(피하	보전직접지불금의	산
추١	하 Fij /	① (현행과 같음)	
	o н/	① (1137 在日)	
2			
		-1 al + -1 -1	
		<u>차액으로 한다</u>	
		키에스크 취디	
		<u>차액으로 한다</u> .	
(3)	\sim (5	() (현행과 같음)	